보도 참고자료1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5. 8. 29.



행정안전부

# 목 차

□.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 1
1. 지방세제 정책 여건 ···································
□. 2025년 지방세제 개편 기본방향3
Ⅲ.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상세내용 4
1.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2.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지원
3.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14         2) 국민 편의 증진15
4.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IV. 세수효과 18
∨. <b>추진일정</b> 18

### I.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

# 1 지방세제 정책 여건

### □ (경제 여건) 소비·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

- **(대내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
  -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 계기 마련
    - ※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5.1/4) △2.3, (4월) 3.5, (5월) △1.3, (6월) 4.3, 민간 소비(전기비, %) ('24.1/4) 0.5, (2/4) 0.0, (3/4) 0.4, (4/4) 0.2, ('25.1/4<sup>P</sup>) △0.1
- (대외경제) 미국 관세부과 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 중으로 對美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통상 리스크 대응 필요

#### □ (재정 여건) 재정수요 지속 증가로 세수 부족 우려

- (지방세입) 부동산 경기<sup>1)</sup> 일부 회복, 지방소득세와 연계된 소득세· 법인세 규모 증가<sup>2)</sup> 등으로 지방세수<sup>3)</sup>는 다소 증가
  - 1)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5월) 6.3, (6월) 7.3
  - 2) '25년 6월 누계 국세수입 : 190.0조(전년 동기 168.6조 대비 21.5조(12.7%) ↑)
  - 3) '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 55.6조(전년 대비 +4.7조, 진도율 48.3%(전년 대비 2.3%↑)
- (재정수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민생 회복,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 국가 균형 성장,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실용적 지방세 정책 추진 필요

## 2 지방세제 개편 추진 경과

- □ (의견수렴) 납세자 눈높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 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
  - (개정건의) 복잡해지는 조세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관계부처, 지방세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의 제도개선 수요 조사\*
    - \* '25년 지방세제 개편 및 세정운영 개선 요구과제 총 1,047건 접수
  - (건의사항 검토) 개정건의에 대해 자치단체, 지방세연구원 등이 함께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을 검토·논의,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

#### 사전검토

#### 일반과제 토론회(1차)

#### 중점과제 토론회(2차)

- **전체 건의 과제**(1,047건)의 중복여부, 타법 관련성 등 **자체 검토**
- 전체 과제(1,047건)에 대해 개정 필요성, 개선 방향 등 분과별 합동 토론
- <sup>①</sup>**1차토론회 선정과제**, <sup>②</sup>세정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추가 과제 심층 토론**
- (심층 논의) 법령마다 주요 개정 과제에 대해 내부심의회를 통해 심충적으로 타당성·효과성 등 검토
  - ※ 지방세입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취지 및 필요성, 타법과의 연계성, 개정 조문안 등
- □ (지방세 지출 정비) 일몰연장, 신설·확대 건의 등에 대해 지방세 특례 원칙·법정 절차에 따라 검토, 지방세 지출 재설계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수립·국무회의 의결, 각 부처 통보(2.26.)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31.)
  -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 신설·확대,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조세전문기관 예비타당성조사(신설·확대)·심층평가(연장) 수행(2~6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5.19.~21.)

#### < '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목표 관리('25년 13.0%) 하에 **연 1.2조원** 지출 재설계
- 신설·확대(5,311억원), 연장(3,521억원), 종료·재설계(2,864억원)

## Ⅱ. 2025년 지방세제 개편 기본방향

정책 목표

###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을 위해 실용적인 세제지원

+

추진 과제

#### 국가 균형발전

### 민생경제 안정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지방 부동산 활성화
- 투자·고용 촉진

- 출산·양육 지원
- 서민·취약계층 지원
- 생활 및 물가 안정

기반 마련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공정 과세 구현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고용 촉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 ❖ 출산·양육, 서민·취약 계층,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생경제 안정
- ❖ 납세자 권익 보호, 편의 제고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정 과세 구현

## Ⅲ.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상세 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 1. 국가 균형발전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지방 부동산 활성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투자·고용 촉진

-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방세 지원 연장

#### 2. 민생경제 안정

출산·양육 지원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재설계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서민·취약계층 지원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근로자·장애인 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

생활 및 물가 안정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3.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
- 주택 취득 후 중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절차 개선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적용 범위 확대

국민 편의 증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4.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합리화

공정 과세 구현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

# 1 국가 균형발전

###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

○ (산업·물류·관광단지)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35%	수도권	취득세 15% 재산세 15%	△20%p △20%p
	시행자	비수도권	취득세 35%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50%	- △10%p
산업단지		可十二色	재산세 60%	<sup>%</sup>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60%	+15%p -
건답단시		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35%	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35%	△15%p -
	입주자	비수도권	취득세 50%	비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60%	- △15%p
		미구포권	재산세 7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75% 재산세 75%	+25%p -
				수도권 취득세 25% 재산세 15%		△10%p △10%p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25%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25%	-
물류단지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35%	+15%p +10%p
글 ㅠ 간 시 				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25%	△15%p △10%p
	: Y! <b></b> XF		두세 50% 난세 35%	비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35%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75% 재산세 50%	+25%p +15%p
				수도권	취득세 10%	△15%p
관광[ 시행		취득	·세 25%	비수도권	취득세 25%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 +1		+15%p

○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수도권 집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 감면 재설계

구 분		현 행		개 정		
			수도권		취득세 15% 재산세 15%	∆20%p ∆20%p
지식선	산업센터	취득세 35% 재산세 35%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35%	-	
				입주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취득세 50% 재산세 35%			△15%p △15%p	
	레기업	(+조례 15%P 可)	비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35%	-
	<b>↑</b>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수도권	<b>●</b> 중소기업	취득세 45% 재산세 45%	△15%p △ 5%p
	② 초기 중견	취득세 50% 재산세 50%	<b>十</b> 工也	② 중견기업	취득세 30% 재산세 30%	△5%p △5%p
기업부설 연구소 영 경견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35%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60%	- +10%p	
	4 대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35%	비 수도권	② 중견기업	취득세 45% 재산세 45%	+10%p +10%p
	<b>₩</b> -1171 H	※ 과밀억제권역 제외		❸ 대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35%	-

###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감면 업종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창업사업장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연장
신설	업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b>감면 업종<sup>*</sup> 확대</b> *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

###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지방세법령, 특례법)

○ (세컨드 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추가로 주택 취득 시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150만원 限)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가액 기준 상향 주택 가액 기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5개구) 外 3억원 12억원 취득가액 3억원 취득세 84개 지역 4억원 9억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원 \* 강화·옹진·연천·가평 인구감소 관심지역 취득세 취득가액 3억원 < 신설 > 재산세 공시가격 4억원 강릉, 익산, 경주, 사천 등 9개 지역 ※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

○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內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 신설<sup>건설투자 보강방안(8.14)</sup>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 內 민간임대 목적으로	중과세 적용	중과세 제외(~'26년) ※ 1년 한시
취득하는 주택	주택 수 포함	주택 수 제외 ※ 임대기간 限

○ (사원용 주택)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 신 설 >	취득세 50%* * 법 25%+조례 25%

####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유사 제도와 형평성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최대 8년) 설정
 ※ (현행)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개정)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50% 이후 3년간 25% 조례)

####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지방세법령, 특례법)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개인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 면을 신설(~'26년)하고 취득세 중과세 제외 건설투자 보갱방안(8.14.)

구 분	현 행	개 정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 설>	<b>취득세 50%</b> * * 법 25% + 조례 25%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m² ↓, 취득가액 6억원 ↓	주택 수 제외	중과세 제외(~'26년) ※ 1년 한시

#### ---- < 주택 수 제외 VS 중과세 제외 세제지원 비교 > -

- (주택수 제외) 신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 (기존 2주택자) 8% → 1~3%, (기존 3주택 이상자) 12% → 8%
- (중과세 제외) 기존 주택 수 관계없이 일반세율(1~3%) 적용
- - \*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구 분	현 행	개 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제외	~'25.12.31.	~′26.12.31.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법 25% + 조례 25%) 감면 연장(~'26년)
  - ※ (요건) ①'24.1.10.~'26.12.31. 준공된 아파트, ②전용면적 85m' ↓ & 취득가액 3억원 ↓, ③'26.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계약 체결

### □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지방세법령, 특례법)

-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 신속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철거	감면	< 신 설 >	<b>재산세 50</b> %(5년간)
후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 3년간 별도합산 적용 - 5년간 <sup>철거 前</sup>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
신축	감면	< 신 설 >	<b>취득세 50%</b> *(150만원 限) * 법 25% + 조례 25% <b>※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b>

### 3) 투자·고용 촉진

### □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지방세법령)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이직 방지를 위해 장기근 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
  - \* (신고·납부세액)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과세표준) × 0.5%(세율)

구 분	현 행	개 정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① (근로자) 식비, 학자금 등 ②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추가) ③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 ※ 1인당 월급여액의 10%(36만원 限)

####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특례법)

○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 국가전략기술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확대(특례법)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감면과 동일 수준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 추가(15%p) 세제지원
  - \*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래 혁신에 기반이 되는 기술(반도체·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71개 기술)

구 분	현 행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15%p 추가 감면	(추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15%p 추가 감면

#### □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방세 지원 연장(특례법)

○ 지역별 중소기업의 교육·입주 지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 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세 50%(전통시장 75%)	80 08

# 2 민생경제 안정

- 1) 출산·양육 지원
-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재설계(특례법)
- (생애최초)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 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감면 한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생애최초 구입 주택		① (일반) 200만원	<좌 동>
	한도	② (소형주택) 300만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 (출산양육) 양육·주거 부담 완화 지원 등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감면 연장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지방세법령)
  - 일·가정 균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

구 분	현 행	개 정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① (근로자) 식비, 학자금 등 ②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특례법)

-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sup>\*</sup>을 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도 감면 대상에 추가
  - \* (든든전세주택)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구 분

현 행

개 정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자

※취득세 25%, 재산세 50%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 분

혀 행

개 정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사회복지법인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25% ~100%(+ 조례 50% 可)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 근로자·장애인 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 장애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 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연장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취득세 25%	

#### 3) 생활 및 물가 안정

####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특례법)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 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병행 추진(「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26.上))

구 분	현 행	개 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취득세 100% 재산세 100%	<b>감면 연장</b> ※ 최소납부 유예 종료

#### □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특례법)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지원**을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그리처드고다	철도시설용	취득세 25%	감면 연장
국가철도공단	국가귀속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b>감면 연장</b> (반대급부 有 50%)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업용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연장 (도시지역분 종료)
	철도차량	취득세 50% (고속철도 25%)	
지방도시철도공사		취득세 100% 재산세 100% 등록면허세 100%	감면 연장

####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특례법)

- 대형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 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신설
  - \*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3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1) 납세자 권익 보호

####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기본법령)

-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참여·의견 제출**하여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역할 확대** 
  - \*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 필요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납세자보호관 역할	<ul> <li>①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li> <li>②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li> <li>③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④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li> <li>⑤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li> </ul>	(추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시 참여, 의견제출

#### □ 주택 취득 후 중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절차 개선(지방세법)

-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을 미충족\* 하여 중과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 신설
  - \* (예) 일시적 2주택으로 <u>취득 후 3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u>,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u>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5년 내 판매하지 못한 경우</u>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처리방법	(추징) 주택 취득일부터 가산세 적용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가산세 없음

###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징수법) 국제 반영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 (현행)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u>담보 제공 시 압류금지</u>  $\rightarrow$  (개정) <u>조건 없이 압류금지</u>
  - \*\* (현행) 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 등  $\rightarrow$  (개정) +  $\underline{U}$ 제보조기구, 재해방지·보안 관련 물건 등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납부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체납 외 부과·징수까지 적용토록 범위 확대 및 근거 마련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	적용범위	제한적 적용(체납)	일반적 적용(+ 부과·징수)
행정제재 부과금	근거규정	<신설>	<ul><li>환급(지급 절차, 직권 지급)</li><li>징수유예(분할납부, 납기일 연기 등)</li></ul>

#### 2) 국민 편의 즁진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지방세법)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 □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기본법) 국세 반영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 축소

구 분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조사개시 15일 전	조사개시 20일 전
재조사	조시계시 10일 전	재조사 개시 7일 전

# 4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지방세법)

국세 반영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0.1%p) 상향 조정
  - \*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을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2억원 이하	0.9%	2억원 이하	1.0%
OTHPHO	2~200억원	1.9%	2~200억원	2.0%
일반법인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HALLISTALOURILL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2.2%
고ㅠ프 답한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합리화(특례법)

○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완화(1→2년)

구 분	현 행	개 정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취득일 1년 이내	취득일 2년 이내
마을회 부동산	직접 未사용	직접 未사용(신축限)

○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개별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되는 경우까지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사회복지법인 취득세	<ul><li>●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li><li>❷ 3년 이내 직접 未사용</li><li>❸ 2년 이내 매각·증여·他 용도 사용</li></ul>	<좌 동>
추징 사유	< 신 설 >	3년 이내 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되는 경우

#### 2) 궁정 과세 구현

###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기본법) 국세 반영

-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체결 후 사망 시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토록 개선
  -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가 불가하나,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좌 동>
사망보험금에		<b>↑</b>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
대한 납세의무 승계	< 신 설 >	② 지방세·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피상속인 체납기간 비율 限)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취득세 적용기준 개선(지방세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지급한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 과세 형평성을 위해 무상세율 적용(증여로 간주)토록 개선
  - \*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원칙) 무상세율(3.5%)	<좌 동>
배우자 또는	(예외) 유상세율(1~3%)	
메구시 포 <del>트</del> 직계존비속간	● 경·공매, 파산, 교환 등 취득	<좌 동>
주택 등 거래	②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 입증	
	<단서 신설 >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3.5%)

###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지방세법)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최초로 신설 (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세\* 적용
  - \* (현행) 4%(일반세율) → (개정) 12%(중과세율)

### Ⅳ. 세수효과

- □ '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1,003억원
  - (증가 요인(+1,273억))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 (감소 요인(△270억)) 인구감소지역 및 출산·양육지원 감면 확대 등

# Ⅴ. 추진 일정

□ (대상 법률: 총 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 향후 일정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8월 28일(목)
-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24일간) : 8월 29일(금) ~ 9월 22일(월) ※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조문 반영
- 차관회의 : 9월 25일(목) / 국무회의 : 9월 30일(화)
- 국회 제출 : 10월 초

# 참고 1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요약)

※ 본문내용에 작성된 하위법령도 "참고1"에 포함하되, 하위법령과 관련된 개정안 등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영

### 1

### 지방세기본법

※ □ : 주요 개정내용(본문내용과 동일)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 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국세 반영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ul> <li>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li> <li>*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li> </ul>	국세 반영, 납세자 권익 제고
3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 하도록 '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 규정 및 비밀 유지의무 위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개선
4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안 법§95)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서식·절차 결함 또는 증명자료 미비 시 보정요구 기간 개선 ※ (現) 20일간 → (改)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납세자
(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법§100, 영§66의2)	○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 으로 의결된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 * 행안부 장관이 심판청구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국세 반영
6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 (안 영§51의2)	○ 납세자보호관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 심의 시 참여 및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 범위 추가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납세자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안 법§40, §41, 영§46)	<ul> <li>○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체계 정비<sup>*</sup> 및 대상 확대<sup>**</sup></li> <li>* (現) 절대적·조건부 압류금지 → (改) 절대적 압류금지</li> <li>** 신체 보조 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li> </ul>	

#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ul> <li>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을 유상</li></ul>	과세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거래 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li>유상세율 적용을 배제</li> <li>*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li>	합리성
	적용기준 개선(안 법§7⑪)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고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과세
	산정방식 보완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성
	(안 법§10의3②)	시가표준액을 적용	제고
3	법인의 지목변경	○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합리성
	명확화(안 법§10의6②)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고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ul><li>○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li></ul>	과세 형평성 제고
(5)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② 등)	○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납세자 권익 제고
6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과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합리성
	보완(안 법§21③)	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	제고
7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안 영§28조의2 등)	○ 장기(10년)·단기(6년) 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년) 및 주택 수 제외(임대기간 限)	납세자 권익 강화

	제목	주요 내용	비고
8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안 영§28의2 등)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년)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납세자 권익 강화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의2)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 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1년 연장('25년→'26년)	납세자 권익 강화
10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안 법§71 등)	<ul><li>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li></ul>	
1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안 영§78의2)	○ 육아휴직자, 출산전·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출산·양육 지원
1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안 영§78의2)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 (항목) 장기 근무(3년↑)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 (한도) Min(급여액의 10%, 36만원)	비수도권 고용지원
13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법§93②)	<ul><li>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li><li>과세특례 종료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삭제</li></ul>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14)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법§103의3®)	<ul><li>○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국내주식 등' → '주식 등')</li><li>* (現) 국내주식 → (改) 국내+국외주식</li></ul>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15)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안 법§103의19②)	<ul><li>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li></ul>	과세 합리성 제고
1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의20①)	<ul><li>○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li><li>※ (現) 세율: 0.9~2.4% → (改) 세율: 1.0~2.5%</li></ul>	세부담 정상화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 (안 법§103의23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現) 일반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內 → (改) 일반법인 4개월 內,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內	납세편의 제고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8)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안 법§107②, 영§106)	<ul> <li>○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li> <li>※ (現) 수탁자(지역·직장주택조합 限) →</li> <li>(改) 지역·직장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등</li> </ul>	과세 형평성 제고
19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 (안 법§108)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 하게 '등록지'로 개선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안 법§112)	○ 비과세 대상 범위를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공공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로 명확화	과세 합리성 제고
21)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안 §119의2①)	○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과세 합리성 제고
22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안 영§103의2, §118)	<ul> <li>○ 빈집 철거 후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부담 완화 기간 확대</li> <li>※ (現) 별도합산 3년 → 활용기간 전체 적용</li> <li>(改) 세부담상한 특례 5년 → 활용기간 전체 적용</li> </ul>	과세 합리성 제고
<b>3</b>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안 법§128③)	<ul><li>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li><li>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식을 시행령에 위임</li></ul>	납세편의 제고
2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법§147②)	<ul><li>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li></ul>	

#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안 법 §2, §4①, §75의3, §80의2)	○ 특례 정의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명확화 ○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 §185)	○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과세 합리성 제고
	지방세 조례감면 감면총량 예외 규정 정비(안 법 §4⑦)	○ 감면규모 제한 예외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안 법 §23)	○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추상적인 고유 업무에서 구체적·개별적 목적사업으로 개선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 및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상시 거주 요건 완화(안 법 §36의3)	<ul> <li>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200만원→300만원)</li> <li>직장이전·학업 등 부득이하게 주소 이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시 거주 추징 요건 합리화</li> <li>※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시 추징</li> </ul>	납세편의 제고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 합리화 (안 법 §36-5, 영 §17-4)	○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정 간소화 * 상시 거주 3년 →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납세편의 제고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5, §90)	○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 개시 시점을 완화(1→2년)	납세편의 제고
8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안 법 §75의2)	○ 재산세 감면기간을 신설하여 최대 8년 <sup>*</sup> 으로 설정 *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감면(조례)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제목	주요 내용	비고
9	인구감소지역 등 창업 의미 명확화 (안 법 §75의4, §75의5)	○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화 하여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에 대해 감면 배제	비수도권 고용지원
10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안 법 §84)	<ul> <li>○ 감면 대상 및 감면 제외 대상 명확화</li> <li>- (감면 대상) 국토계획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li> <li>- (감면 제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li> </ul>	과세 합리성 제고
11)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추징규정 신설(안 법 §85-2)	<ul><li>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추징규정 신설</li></ul>	납세편의 제고
1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법 167의3)	<ul><li>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인용조문 정비</li><li>* 지방세법 §95④ → §95⑤</li></ul>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13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5)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구분	비수도권 고용지원
1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의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3.5%)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15)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법 §180의2)	○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	과세 합리성 제고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 (안 법§2)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의 범위를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표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지방세입 체계 명확화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ul> <li>○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개선</li> <li>※ (現) 관계법에서 체납된 경우 적용</li> <li>→ (改)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적용</li> </ul>	지방세입 체계 명확화
③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법§7의7, 영§5의16~1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 지급 절차, 직권 지급 등 세부적인 규정 신설	지방세입 체계 명확화
<ul><li>④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법 §7의9, §5의12~14)</li></ul>	○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납세편의 제고
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법 §1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방세입 체계 명확화

# 참고 2 20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단위 : 억원, '24년 결산 기준)

유성	주요 내용		: 익원, 24년 결산 기군) 지 <b>출 액</b>			
유형	분야	세부	내용	현 행	향 후	증 감
	합 계			12,699	11,696	△1,003
	소 계		5,041	5,311	270	
신설확대	사회복지	▶ 생사보 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파트 수분양자		4,987	5,106	119
(9건)	교육·과학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_	_	- (추정 <del>곤</del> 란)
(911)	문화·관광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동산		3	18	15
	국토·지역	▶ 인구감소지역 주택, 빈집 철거 후 토지		51	187	136
		소 계		3,521	3,521	-
	농·어업	▶교환·분합 농지	▶ 20톤 미만 소형어선	151	151	-
연장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고용공단	296	296	-
(현행)	교육·과학	▶ 한국환경공단	▶ 해양환경관리공단	3	3	-
	기업구조	▶ 재생류 PFV 부동산	▶ 중소기업협동조합	728	728	-
(60건)	수송·교통	▶ 도시철도공사	▶ 수소전기화물자동차	260	260	-
	국토·지역	▶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 이전 <del>공공</del> 기관 부동산	1,035	1,035	-
	공공행정	▶ 지방공사·공단	▶ 정당 부 <del>동</del> 산	1,048	1,048	
	소 계			3,631	2,864	△767
	농·어업	에 세 대 장 사 장 생 •	▶ 지방농수산물공사	535	389	△145
연장	교육·과학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	-동산	255	120	△135
(재설계)	기업구조	▶ 벤처기업	▶ 지식산업센터(사업시행자)	712	454	△258
(26건)	수송·교통	▶ 국기철도 <del>공</del> 단 부동산	▶ 물류단지	168	108	△60
	국토·지역	▶ 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1,855	1,688	△167
	공공행정	▶ 마을회 소유 부동산·임야		106	105	△1
	소 계		506	-	△506	
	농·어업 ▶ 농협·신협 등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149	-	△149	
종료	•	▶ 농어촌공사 무상양여 토지		2	-	△2
	사회복지	▶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매각·임대 목적)		_	_	_
(16건)	기업구조	▶ 지역신용보증재단		2	-	△2
	국토·지역	▶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24	-	△24
	공공행정 등	▶ 재외외교관자녀 기숙사	▶조합법인 과세특례	329	-	△329